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0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강대식 • 조지연 • 박준태

이인선 · 김상훈 · 강명구

백종헌 • 유용원 • 박덕흠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강도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 음향장치, 영상표시장치 등 다양한 음향장비로 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행 소음강도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소음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의 육성 외에 녹음·녹화된 음성 또는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 확성 장치 사용 불가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사람의 육성(內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또는 시위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4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로한다.

제14조제1항 중 "북"을 "음향장치, 북"으로,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발생시켜"를 "발생시키거나 제2항에 따른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로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육성(內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 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4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 시간) -----오후 9시부터 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 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 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u>오후</u> 9시부터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도----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 ----음향장치, 북-----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 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 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복성에 관한 기준----. <신 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 람의 육성(肉聲) 외에 녹음 또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하다.
 - 1. ~ 3. (생략)
 - 4. <u>제14조제2항</u>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 부・방해한 자
 - 5. (생략)

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
복적으로 재생하여서는 아니
<u>된다.</u>
<u>③</u>
발생시키거나 제2항에 따른 녹
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
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제24조(벌칙)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4조제3항</u>
5. (현행과 같음)